

##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1549호

「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을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1월 15 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# 「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####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기계식주차장의 수시검사 제도를 도입하고,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원 및 관리자 등에 대해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신설하며, 기계식주차장치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「주차장법」(법률 제19686호, 2023. 8. 16. 공포, 2024. 8. 17. 시행) 및 같은 법 시행규칙(부령 제1388호, 2024. 9. 20 공포·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, 기계식주차장 수시검사 기준을 규정하고,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의 신청·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기계식주차장 자체점검의 항목과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려는 것임.

#### 2. 주요 내용

가. 수시검사 기준 규정(안 제16조, 제23조, 별표 2의2 및 별지 제2호의1)

나. 교육기관의 신청·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(안 제18조, 제19조, 제20조 및 별지 제9호)

다. 자체점검의 세부항목 및 방법 규정(안 제21조 및 별표4)

### 3. 의견제출

「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참조 : 생활교통복지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, 정책자료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서 제출
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개정안	수정안	의견

나. 보내실 곳

○ 주소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6동 622호

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생활교통복지과

○ 전화(☎) 044-201-3814 / 팩스 044-201-5581

○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→ 정책자료 → 법령정보 → 입법예고·행정예고